##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. 9. 27 조례 제244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공영장례"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연고자"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.
  - 3. "무연고자"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 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 대상)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
  - 2.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 · 기피하는 경우
  - 3.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지원 방법)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

##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

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(장제급여 등)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,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 내용)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- 1. 수의,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
  - 2. 시체검안비, 운반비, 영안실 안치료 등
  - 3. 장의차량, 장례식장, 화장시설 사용료
  - 4.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
  - ② 시장은 화장(火葬)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.
- 제7조(업무대행) 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나 장례 업무가 가능한 법인, 단체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  - 2.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